

보수규정시행요강

제정 : 1992. 7. 7. 제1차개정 : 1996. 6. 13.
제2차개정 : 1999. 1. 1. 제3차개정 : 1999. 12. 16.
제4차개정 : 2003. 12. 24. 제5차개정 : 2004. 10. 25.
제6차개정 : 2006. 1. 17. 제7차개정 : 2006. 12. 21.
제8차개정 : 2009. 8. 10. 제9차개정 : 2010. 7. 1.
제10차개정 : 2011. 4. 27. 제11차개정 : 2011. 9. 1.
제12차개정 : 2012. 1. 17. 제13차개정 : 2012. 10. 29.
제14차개정 : 2013. 12. 18. 제15차개정 : 2014. 7. 29.
제16차개정 : 2014. 11. 5. 제17차개정 : 2014. 12. 17.
제18차개정 : 2015. 11. 27. 제19차개정 : 2015. 12. 30.
제20차개정 : 2016. 4. 28. 제21차개정 : 2016. 8. 17.
제22차개정 : 2016. 12. 26. 제23차개정 : 2017. 10. 19.
제24차개정 : 2017. 12. 27. 제25차개정 : 2018. 12. 27.
제26차개정 : 2019. 8. 1. 제27차개정 : 2019. 12. 27.
제28차개정 : 2020. 7. 1. 제29차개정 : 2020. 12. 22.
제30차개정 : 2021. 6. 25. 제31차개정 : 2021. 12. 24.
제32차개정 : 2022. 6. 27. 제33차개정 : 2022. 10. 19.
제34차개정 : 2022. 12. 21. 제35차개정 : 2023. 12. 21.
제36차개정 : 2024. 4. 17. [제37차개정 : 2024. 7.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보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지급) 보수는 규정 및 이 요강에 따라 급여담당 팀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보수

제1절 기본연봉

- 제3조(기본연봉 조정)** ①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원 1급, 2급 및 3급(부서장급)의 기본연봉은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정부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직급별 한계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 ② 일반직원 1급, 2급 및 3급(부서장급)의 경우 별표 2의 1급, 2급 및 3급(부서장급)기본급 인상률 조정표에 따라 전년도 개인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누적식으로 차등 조정한다.
- ③ 일반직원 3급(팀장급 이하), 4급, 5급 및 사무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1조에 따른 경력가급 시점의 직급·직위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가급액을 산정한다.
- ④ 별정직원(기한부고용계약별정직원을 제외한다)의 기본급은 별표 1의 일반직원 3급 팀장급 이하 기본급과 같다. 다만, 직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사무직원 기본급을 준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임용의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부여된 경력연차를 감안하여 기본급을 산정하되, 별표 1의 일반직원 3급 팀장급 이하 기본급을 준용할 수 있다.
- ⑥ 제2항의 기준인상률은 직급·직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인상률의 결정, 차등구간별 인원배분비율 조정, 등급 적용, 조정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중 승진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할 일반직원 2급 및 3급(부서장급)의 개인성과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승진 전 직급·직위를 기준으로 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의2(기본연봉 조정의 예외) ① 직전년도 말 기준 일반직원의 해당 직위 근무기간(일반직원으로 임용 또는 전직하여 재직한 기간으로 휴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함)이 직위별로 정한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직원 1급, 2급 및 3급(부서장급) : 직전연도 기본연봉을 해당 연도 기본연봉으로 함
 2. 일반직원 3급 팀장급 이하 : 별표 1의 경력가급액 미적용
- ② 제1항의 일정기간은 직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원 : 20년+Max(0 , 1.5년-군 의무복무기간). 다만, 군 의무복무기간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 경력으로 가산한 기간을 말함

2. 팀장급 : 10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연중 직위승진하는 경우, 승진일자 이후부터는 제3조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다.

제2절 직무연봉

제4조(직무연봉) 직원의 직무연봉은 별표 4와 같다

제3절 정기상여금

제5조(정기상여금 지급 기준) ① 일반직원 3급 팀원, 4급, 5급 및 사무직원, 별정직원(기한부고용계약별정직원을 제외한다)의 정기상여금은 별표 4의 동일 직급 최하위 직무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일반직원 3급 팀장급의 정기상여금은 개인별 직무연봉의 100%를 지급한다.

제4절 성과연봉

제6조(내부평가급) ① 일반직원 1급, 2급 및 3급(부서장급)의 경우 동일 직위·직급내 E3, M3 직무연봉의 100%를 기준으로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 3의 지급률로 차등 지급한다.

② 차등구간별 인원배분비율 조정, 등급 적용, 조정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중 승진에 따라 내부평가급 산정에 적용할 일반직원 2급 및 3급(부서장급)의 개인성과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개인별 직무연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직위·직급의 구분은 매년 1월 급여일 당시 직위·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기인사 시기에 따라, 기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경평성과급 지급대상)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근무기간 산정시 근무를 병행하지 않는 교육훈련 기간, 결근기간, 휴직(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은 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기간, 대기발령기간 및 정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경평성과급 지급액) 규정 제27조에 의한 경평성과급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기준월봉(이하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총인건비내에서 제9조의 지급률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경평성과급 지급률) ① 부서장 및 팀장(국내지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평성과급 지급률은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성과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장이 정한다. 다만,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규정」에 의하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부서장 및 팀장의 경우 공사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경평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한다.

② 팀원의 경평성과급 지급률은 자신이 속한 팀(국내지사를 포함한다)의 팀장과 동일한 평점을 받는 것으로 하여 사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무를 하는 자, 수석전문역,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공사 직원 차하위지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파견근무를 하는 자의 경우 파견업무의 성격, 업무난이도,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근무연수자는 근무지사의 지급률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 중 소속의 변동이 있는 자의 경평성과급 지급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자신이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팀의 부서장 또는 팀장이 받은 제1항의 평점에 따른 지급률을 각 소속에서의 근무일수로 아래 산식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사장이 정한다.

$$WAR = \frac{Ra \times Pa + Rb \times Pb + Rc \times Pc + \dots}{Pa + Pb + Pc + \dots}$$

WAR : 사업연도 중 소속의 변동이 있는 자의 가중평균지급률
 Ra, Rb, Rc, ... : 사업연도 중 자신이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팀의 부서장 또는 팀장이 받은 지급률
 Pa, Pb, Pc, ... : 사업연도 중 자신이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팀에서의 근무일수

제10조(경평성과급 지급일) 경평성과급은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규정」에 의한 연간성과 평가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

제10조의2(성과연봉의 예외) 제6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대상기

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최저지급률을 적용한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제5절 경력가급

제11조(경력가급의 계산) ① 경력가급은 달의 첫째 날에 한다. 다만, 달의 첫째 날이 아닌 날에 현재의 경력이 결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경력가급기간이 지난후에 처음으로 오는 달의 첫째 날에 한다.

- ② 경력가급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 ③ 경력 41년차에 도달한 때에는 경력가급을 정지시킨다.

제6절 국외직원 보수

제12조(보수의 지급통화) 보수는 근무지에서 통용되는 법정통화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수의 지급기준 및 지급지) ① 국외근무직원의 보수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이외에 국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며, 지역별 국외근무수당은 별표 5를 따른다.

- ② 국외근무직원의 보수 중 국외근무수당은 근무지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보수는 국내에서 지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직원의 신청 등에 따라 국외근무수당을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직무연봉, 내부평가급, 정기상여금을 근무지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평성과급) 국외직원의 경평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국외직원이 국내 근무할 경우의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제9조의 지급률로 차등 지급한다.

제15조(국외근무수당의 결정) 국외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16조(보수의 선급) 이동발령을 받은 자가 착임한 때에는 국외근무수당의 3개월분 이내에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7절 수당

제17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국내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그 초과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제1항의 연장근로수당 또는 제2항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④ 시간외근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간외근무 시행요령」을 따른다.

제18조(연차수당) ① 연차수당은 지급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연차 보상후 동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을 동 휴가 사용일 익월 보수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익월 정기급여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환입한다.

제18조의2(자녀수당) 자녀수당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보칙

제19조(계산단위) 보수의 계산에 있어 통화단위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제20조(적용환율) ① 미 달러화와 현지통화와의 환산율은 보수 지급일에 근

무지의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미 달러화 현찰매도율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수 지급 시 원화와 현지통화와의 환산율은 그 달 첫째 영업일의 최고고시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21조(기한부고용계약별정직원의 보수) 기한부고용계약별정직원에 대하여는 규정 제2장에 의한 보수를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22조(국외현지채용직원의 보수 등) 국외현지채용직원의 보수는 채용대상 직원의 능력, 경력 및 현지 법령,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3조(수습사원의 보수) 수습사원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서식) 이 요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급여담당 팀장이 정한다.

부칙(제정)

①(시행일) 이 요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조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포괄승계한 직원의 경우 1979년 11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2인을 초과할지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③(다른 요강의 폐지) 보수규정시행요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

이 요강은 199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요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요강은 199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요강은 200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요강은 200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요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요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요강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에 따른 1급, 2급(해외근무자 및 2010년 하반기 2급 승급자 포함)의 최초 기본연봉은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보수규정 별표 1에 의한 2010.7월부터 2010.12월까지의 근속급과 이에 연동하는 기본성과급의 합계액으로 하되, 동 금액을 기준으로 2011년초 갱신 체결한다.

③ (다른관계규정의 폐지) 이 요강의 시행일로부터 “보수규정국외보수시행요

강”은 폐지한다.

부칙(10)

이 요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국외직원 직무연봉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요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요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요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는 2012년 10월 1일부터, 별표 1의 국외직원 직무연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요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이 요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

이 요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7)

이 요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이 요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와 제16조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이 요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에 따른 최초 기본연봉은 이 요강 시행전 기본급과 차등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본급은 기본연봉의 절반이 되도록 한다.

부칙(21)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국외근무 수당표는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의 시행전 또는 이 요강 시행후 2년 이내에 기본연봉이 별표 1의 기본연봉 한계액표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직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본연봉 한계액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22)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19차 개정 보수규정시행요강 별표 1의 각 목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가산한다.
 - 가. 부서장급 : 210천원
 - 나. 팀장급 : 210천원
 - 다. 팀 원 : 다음 표에 따른 금액. 단, 5급 근무 4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20천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단위 : 천원)

일반직원			사무직원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4급
480	390	150	510	420	390	90

부칙(23)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요강 제3조 및 별표 1, 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에 따른 기본급은 이 요강 시행전 기본급과 차등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24)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3차 개정 보수규정시행요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은 시행일을 2017년 10월 1일로 한다. 다만, 이 요강의 시행에 따라 보수를 정산함에 있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5)

이 요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6)

이 요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7)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6차 개정 보수규정시행요강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시

행하는 개정사항은 시행일을 2019년 8월 1일로 한다.

부칙(28)

이 요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9)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8차 개정 보수규정시행요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은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30)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9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21년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성과연봉부터 적용한다

부칙(31)

이 요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2)

이 요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3)

이 요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4)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별표 4

의 1)의 개정사항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23조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 수습사원이 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요강의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32차 개정 보수규정시행요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은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 2. 제33차 개정 보수규정시행요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5조의 개정사항의 시행일은 2022년 10월 1일로 한다.
 -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시행요강 별표 4의 라. 팀원(일반직)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S1	S2	S3	S4	S5
1급	31,791	31,428	30,699	30,333	28,368
2급	31,671	31,305	30,576	30,213	28,248
3급	31,398	31,035	30,306	29,940	28,128
4급	27,369	27,006	26,277	25,911	24,150
5급	19,299	18,933	18,204	17,841	16,179

부칙(35)

- ① (시행일) 이 요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경력 가급의 계산)제3항, 별표 1, 별표 4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1급 및 별표 4의 1), 4), 6)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요강의 적용례는 각 호와 같다.
 - 1. 2023년 일반직 1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연봉은 제3조(기본연봉 조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기본연봉(이하 “2023년도 기본연봉”)이 아닌, 제3조(기본연봉 조정)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하기 전 금액으로 한다.
 - 2. 2024년에 적용하는 제3조(기본연봉 조정)제1항의 전년도 기본연봉 및 제3조의2(기본연봉 조정의 예외)제1항제1호의 직전년도 기본연봉은 2023년 기본연봉에서 1,800천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2024년 제3조의2(기본연봉 조정의 예외)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최초 적용받은 때의 경력연차를 개정된 별표 1을 적용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

부칙(36)

(시행일) 이 요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7)

(시행일) 이 요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 기본연봉

o 일반직원 기본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급	상한액	하한액
1급	90,602	51,029
2급	80,188	45,822
3급(부서장급)	71,280	40,732

o 일반직원 3급 팀장급 이하 기본급

(단위 : 천원)

초 임	경력 가급액	
	3급 이하 팀원	3급 팀장급
9,480	1,800	1,500

o 사무직원 기본급

(단위 : 천원)

초 임	경력 가급액	
	~경력 10년차	경력 11년차~41년차
7,104	1,296	816

- 1) 일반직원 1급, 2급 및 3급 부서장급의 기본연봉 상하한액은 해당 연도 기본연봉 인상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2) 일반직원 3급 팀장급 이하 경력 2년차에 2,400천원을 별도 가급한다.
- 3) 직원 기본연봉에는 월 20만원의 중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일반직원 1급, 2급 및 3급(부서장급) 기본급 인상률 조정표

구분	성과평가 결과 등급				
	S	A	B	C	D, E
인 상 률	a+2%	a+0.3%	a	a-0.3%	a-2%
인원분포	10%	15%	50%	15%	10%

주1) a=기준인상률

주2) 등급내 인원이 위 인원비율에 정수로 맞지 않을 경우, B등급을 중심으로 배분할 수 있다.

주3)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S등급 10%이상, D와 E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을 유지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 B, C등급의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주4) α값을 반영한 인상률이 음수인 경우에는 인상률을 0%로 한다.

[별표 3] 일반직원 1급, 2급 및 3급(부서장급) 내부평가급 지급률표

등급	S	A	B	C	D	E
지급률	135.5%	105%	100%	95%	64.5%	0%
인원분포	10%	15%	50%	15%	10%	

주1) 등급내 인원이 위 인원비율에 정수로 맞지 않을 경우, B등급을 중심으로 배분할 수 있다.

주2)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은 S등급 10% 이상, D와 E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을 유지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 B, C등급의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국내직원 직무연봉표

가. 본부장급

(단위 : 천원)

구분	E1	E2	E3	E4	E5
1급	51,930	50,691	49,452	48,213	46,974

나. 부서장급

(단위 : 천원)

구분	M1	M2	M3	M4	M5
1급	45,798	42,225	39,579	36,933	33,360
2급	42,231	39,276	37,560	35,844	32,889
3급	40,620	38,253	37,017	35,781	32,841

다. 팀장급

(단위 : 천원)

구분	M1	M2	M3	M4	M5
1급	39,813	37,740	36,747	35,748	32,799
2급	39,012	37,233	36,477	35,721	32,799
3급	36,567	34,785	34,032	33,276	32,610

라. 팀원(일반직)

(단위 : 천원)

구분	S1	S2	S3	S4	S5
1급	34,953	34,569	33,801	33,420	28,368
2급	34,950	34,566	33,798	33,417	28,248
3급	34,947	34,563	33,795	33,414	28,128
4급	30,771	30,387	29,619	29,235	24,150
5급	22,275	21,894	21,126	20,742	16,179

마. 팀원(사무직)

(단위 : 천원)

구분	S1	S2	S3
1급	21,516	21,333	20,589
2급	20,586	20,400	19,659
3급	19,491	19,302	18,561
4급	15,822	15,636	14,892

- 1) 일반직 3급 근무 6년 이상인 팀원에 대하여 1,800천원 가급하며 가급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지급
- 2) 일반직 4급 근무 3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485천원 가급
- 3) 일반직 5급 근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629천원 가급, 4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4,695천원 가급, 6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8,010천원 가급
- 4) 자금운용·회계·감사·보수·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팀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720천원 가급
- 5) 「보수규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한 직무연봉은 동일직급 팀원의 최하위 직무등급으로 산출한 직무연봉의 30%를 지급
- 6) 팀장급 이상의 상위직위를 15일 이상 직무대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직위가 본부장인 경우 4,800천원, 부서장급(지사장 포함)인 경우 4,200천원, 팀장급인 경우 3,600천원을 가급
- 7) 팀장급 이상의 동일 직위를 15일 이상 겸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직위와 겸임 직위 중 높은 직무등급을 적용하고, 이에 더하여 겸임 직위가 본부장인 경우 2,400천원, 부서장급(단장이 단장 외 부서장급을 겸임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 1,800천원, 팀장급인 경우 1,200천원을 가급
- 8) 단장에 대해서는 2,400천원을 가급
- 9) 정기상여금·내부평가급 지급 기준금액 산정시 1)~4), 6)~8)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5)은 적용한다.

[별표 5] 국외근무수당표

국가	단위	1급	2급	3급	4급	5급
미국	USD	3,446	3,229	3,011	2,772	2,534
중국1 ^{주1)}	CNY	23,227	21,689	20,151	18,456	16,763
중국2 ^{주2)}	CNY	22,245	20,771	19,296	17,675	16,054
브라질	USD	3,488	3,269	3,049	2,809	2,568
프랑스, 독일	EUR	3,204	2,996	2,788	2,543	2,323
인도네시아	USD	3,202	3,003	2,803	2,583	2,364
러시아	USD	3,775	3,536	3,297	3,034	2,772
UAE	USD	3,488	3,269	3,049	2,809	2,568
멕시코	USD	3,102	2,914	2,726	2,517	2,310
일본	JPY	451,805	422,250	392,694	358,150	326,821
영국	GBP	2,653	2,503	2,353	2,187	2,022
베트남	USD	3,102	2,914	2,726	2,517	2,310
파나마	USD	3,202	3,003	2,803	2,583	2,364
칠레	USD	3,335	3,127	2,918	2,688	2,460
인도 ^{주3)}	USD	3,102	2,914	2,726	2,517	2,310
필리핀	USD	3,202	3,003	2,803	2,583	2,364
남아공 ^{주3)}	USD	3,102	2,914	2,726	2,517	2,310
카자흐스탄 ^{주3)}	USD	3,102	2,914	2,726	2,517	2,310
사우디아라비아 ^{주3)}	USD	3,335	3,127	2,918	2,688	2,460
이란 ^{주3)}	USD	2,937	2,760	2,582	2,387	2,191
싱가포르	SGD	4,897	4,573	4,249	3,891	3,535
폴란드	EUR	2,714	2,538	2,362	2,157	1,969
스페인	EUR	3,081	2,881	2,680	2,446	2,235
터키	EUR	3,230	3,019	2,808	2,564	2,341

주1) 북경, 상해, 충칭

주2) 시안, 광저우, 선양, 청두(성도), 칭다오

주3)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 (2급 이상 USD 800, 3급 이하 USD 720 가급)